

도시관리계획(도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139호(2006.04.27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도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·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8일

도 봉 구 청 장

1. 결정(변경)취지
- 도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봉동 600-27 외 1필지의 변경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
2. 도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- I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- II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- III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- 나. 획지조서 : 변경
- 기정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14	3	1,002.9	도봉동 600-27	1,002.9	획지계획
18		419.5	도봉동 600-46	419.5	획지계획

- 변경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14	3	1,422.4	도봉동 600-27	1,002.9	획지계획
			도봉동 600-46	419.5	

3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- 가. 대지내 공지 및 통로

제어요소	확보면적	적용구역	비고
전면공지	·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에 의한 공지	· 지구단위계획구역내	- 도봉동 600-46 북측 건축한계선 후퇴 (1m → 2m) - 건축한계선 후퇴를 통한 차도형 전면공지 추가 조성
공공보행통로	· 폭원 2.0m~4.5m	· 보행통로가 필요한 대지	- 일부구간 선형 조정 도봉동 600-46 일대 (폭 2m → 3m)

※ 그 외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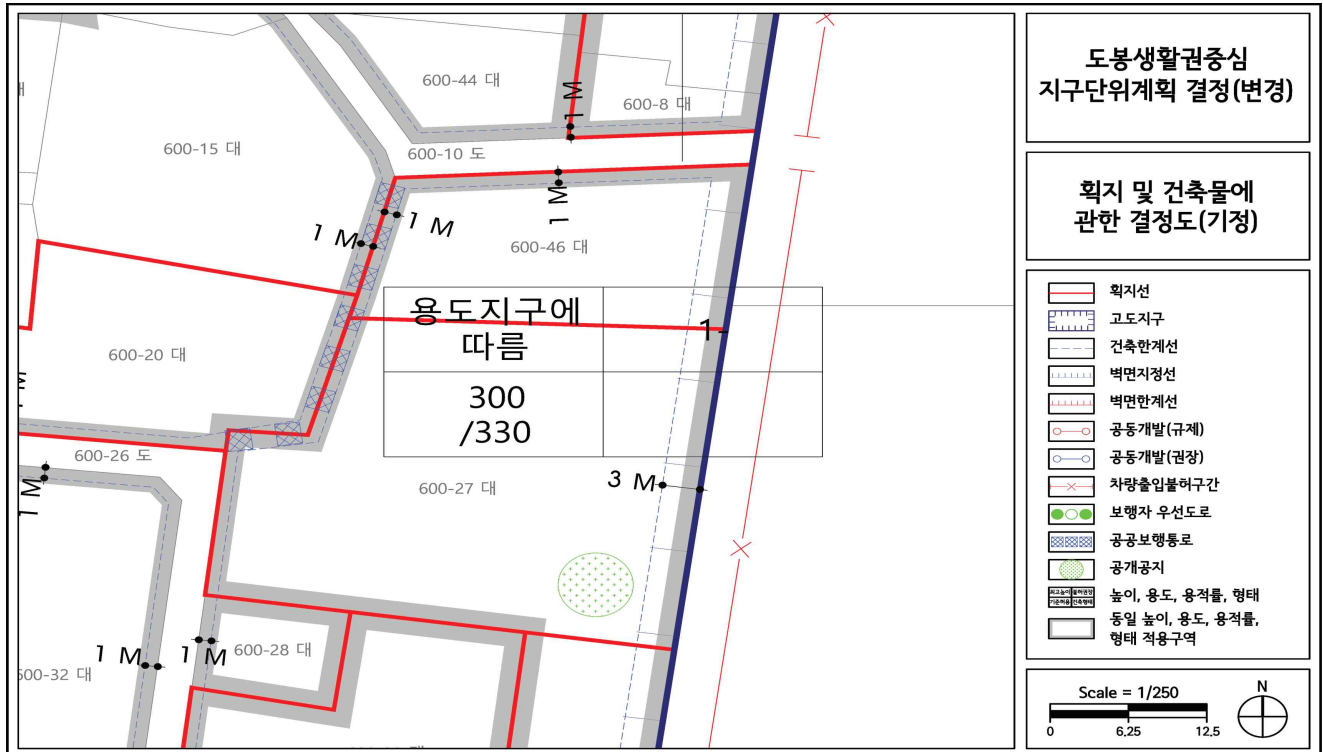
3. 관계도면 : 따로붙임

※ 붙임 지형도면(그 외 세부 관계도면 생략)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열람장소 : 도봉구청 도시계획과(☎2091-356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도

□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(기정)



□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(변경)

